



발행번호 2-210-2015-20619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불기호 및  
문서번호

2015. 11. 4.

수 신 해우법률사무소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형제53370호	
② 고소인 성명	김하나 외 1명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명	김승유
	④ 주민등록번호	430819-1*****
⑤ 죄명	가. 은행 범위반	
⑥ 처분검사	김종우	
⑦ 처분년월일	2015. 10. 28.	
⑧ 처분요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10. 28.

사건번호 2015년 형제53370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종우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대표이사: 마이클 디.톰슨)

2. 론스타매니지먼트코포엘티디(대표이사: 존 피.그레이켄)

3. 론스타파트너스포엘피(대표이사: 존 피.그레이켄)

4.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대표이사: 존 피. 그레이켄)

5. 마이클디톰슨

6. 존피그레이켄

7.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대표이사: 김정태)

8. 김승유

9. 김정태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대표이사: 김한조)

11. 김한조

II. 죄 명 은행법위반

III.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 요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

할 당시 '론스타에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책임을 외환은행에 전가하는 면책조항'을 포함시킨 다음, '15. 1. 9. 위 약정에 따라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한 금액 중 413억 원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행법위반

### 불기소 이유

#### ?? 인정되는 사실

1. 한국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과정 아래 내용은 당첨 2015형 제 14007호 불기소결정서를 참조하였다.

- 2003. 10. 31.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인수하여 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 2003. 11. 19.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 15,764,706주를 당일 주식거래 종가인 5,03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 11. 20.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한편, 2003. 11. 21. 한국외환은행 경영진이 주식시장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카드의 갑자 검토를 발표하자 외환카드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03. 11. 28. 한국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국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갑자 없는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2011. 10. 6. 위와 같은 일련의 주가조작 행위로 론스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2011. 10. 6. 선고 2011노80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248 판결 등, 기록 제223~299쪽 참조).
- 2008. 8. 8.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2003. 11. 20. 외환카드 주식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의 강박으로 인해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2011. 12. 13. 위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는 연대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판정'이라 함, 기록 제213~222쪽 참조).
- 2012. 2. 27. 론스타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배상금 718억 원 상당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다음, 2012. 10. 17.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

청을 하였고, 2014. 12. 23. 위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환은행이 위 배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연 5%)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제2차 중재판정’이라 함, 기록 제300~364쪽 참조).

○ 위와 같은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2015. 1. 9. 론스타에 약 413억 원(USD 37,747,525.53)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 2.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

○ 2011. 12. 3.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1주당 11,900원으로 계산한 총매매 가액 3조 9,156억 원에 론스타가 보유한 한국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을 인수하였다.

-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기록 제949~953쪽 참조), 2010. 11. 25. 1주당 14,250원으로 계산한 1차 매매계약서, 2011. 7. 8. 1주당 13,390원으로 계산한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 계약이 확정되었다.

○ 위 1, 2, 3차에 걸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중 ‘책임면책조항’에 “올림푸스캐피탈, 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판결로 인해 만약 외환은행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다.

## ?? 고발인의 주장

○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발인들의 은행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 외환카드 추가조작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올림푸스캐피탈로 하여금 보유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이므로,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배상금에 대하여 외환은행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하나금융지주는 자신이 ‘제2차 중재판정’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예상하여,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위 ‘책임면책조항’을 삽입하여 당시 대주주인 론스타

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외환은행이 500억 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론스타는 이를 초과한 금액의 51.02%만 부담한다는 면책약정은 한국외환은행이 대주주인 론스타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여 은행법 위반이 된다.

- 2015. 1. 9. 한국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위 면책합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원이 지급된 것이다.

### ?? 피고발인 측의 주장

○ 이에 반해 피고발인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은행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제1차 중재재판'에서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이 폐소한 것은 한국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추가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의 궁박을 이용하여 외환카드 주식을 불공정한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한국외환은행은 '제2차 중재재판' 중에 론스타의 위법행위 및 한국외환은행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일부 폐소하였고, 연 5%에 상당하는 자연배상금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재판정에 따라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상금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책임면책조항'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다.

- 위 '책임면책조항'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한국외환은행이 부담하는 우발채무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에 론스타로 하여금 일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으로 회사 인수자인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호조항일 뿐, 론스타에게 자산의 무상양도와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 ?? 판단

1. 한국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과정 아래 내용은 당첨 2015형 제14007호 불기소결정서를 참조하였다.

○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1차 중재판정'은 올림푸스캐피탈이 2003. 11. 20. 한국외환은행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바, 중재재판소는 론스타 및 한국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의 재정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외환카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외환카드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방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식 매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론스타 및 한국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기록 제213~222쪽 '제1차 중재판정문' 참조).

※ 이에 반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합병에 반대하는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2003. 11. 21. 당시 외환은행 행장 직무대행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추진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 인해, 그 다음 날인 11. 22.경부터 위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사건으로 위 중재판정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기록 제223~299쪽 서울고법 2011. 10. 6. 선고 2011노806 판결 및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248 판결 등 참조).

○ '제1차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 지급액에 대해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제2차 중재판정'에서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강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① 2003. 11. 20. 올림푸스캐피탈의 주식인수를 결정한 한국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가 지정하지 않은 이사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점, ② 저가매수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는 한국외환은행이었던 점, ③ 한국외환은행은 저가매수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 은행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얻은 점 등을 이유로,

- 한국외환은행은 '제1차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50%를 2012. 2. 27.부터 지급시까지 연 5%의 이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 제300~364쪽 '제2차 중재판정문' 참조).

○ 한편, '제2차 중재판정'에 따른 한국외환은행의 구상금 지급품의서 상으로도 위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이 지급된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책임면책조항'이 구상금 지급의 근거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기록 제957~958쪽 '론스타 중재사건 관련

중재판정금액 등의 잡지급 처리' 지급품의서 참조).

## 2. 책임면책 조항의 의미

○ 위 '책임면책조항'은 문현 그대로 해석하면 중재판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이 부담하게 될 우발채무가 50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론스타가 그 초과부분의 51.02%(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중재판정 결과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위 조항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우발채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은행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 특히,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주식매매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2011.

12. 3.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제1차 중재판정'에서 올림푸스캐피탈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6,450억원 상당으로,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면책조항을 통해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기록 제946~947쪽 참조).

○ 더욱이, 실제 한국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금액은 413억 원에 불과하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위 '책임면책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 3. 결론

○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① 한국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② 위 국제중재판정 결과 및 그 구상금 지급 과정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책임면책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 '책임면책조항'은 해석상으로도 하나금융지주 측이 우발채무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되는바, 고발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고발인들에게 은행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